

예산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제 20 호
--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 : 1998년 10월 15일

발 의 자 : 김영현 의원외 2인

□ 개 정 이 유

-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개정으로 상임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사무를 보좌해 오던 사무직원에 대한 정수를 조정하고,
- 지방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실·과 하부조직으로 설치되었던 “계” 직제가 폐지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.

□ 주 요 골 자

- 사무과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의사계를 두도록 된 것을 계 직제폐지로 “의사계”를 삭제 (안 제3조)
- 전문위원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4조)
- 사무직원의 정원규정을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정하도록 함 (안 제5조)
-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예산군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(안 제6조)

□ 참 고 사 항

-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
-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
-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

예산군조례 제 호

예산군의 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

예산군의 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예산군의 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의 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.

②사무과는 의장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.

제3조(사무과장)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(이하 “사무과장”이라 한다)과 사무직원(이하 “직원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③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괄하고,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4조(전문위원) ①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.

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.

③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
제5조(직원의 정원)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 분장은 따로 예산군 규칙으로 정한다.

부
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